

다. 이용자 관리

□ 개요

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운동을 개선하고 청소년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고하여야 함

□ 업무내용

1) 청소년이용시간 관리

○ 개방시간

- 주 말 : 시설 개방(의무), 개방시간 : 09시~21시(권장)
(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휴관)
- 평 일 : 22시까지 운영(지역에 따라 시간 자율 조정)

○ 시간관리

-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, 직영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 종료시간에 맞추어 폐관하지 않도록 함
- 주중의 평일 개방시간은 22:00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및 도심과 거리가 먼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주중 운영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아, 아동, 부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
-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도록 함
- 주말 개방은 모든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주말 활동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시설 이용을 통해 주말 시간 시설운동을 활성화함

2)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

-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%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·관리하여야 함
-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청소년수련시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

- 이용률 제고 방안 개발 및 실행관리
- 시설 공간 개선을 통한 청소년들의 호감도 제고
- 청소년 자유허용 및 자치활동 지원을 통한 이용률 제고
- 청소년단체 및 학교와 연계를 통한 이용률 제고
- 주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
-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법의 개발
- 이용률 산정 및 보고
 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의 규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청소년이용률 현황, 운영,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 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별 및 분기별로 청소년수련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 받아 취합 정리하여야 함
 - 청소년수련시설에 ‘일일 청소년활동실시 현황부’, ‘청소년활동참여자 명단(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)’등의 장부·서류를 비치 하도록 하고 기록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3)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

- 성인과 유아 등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함

4)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성별 통계 관리

-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현황을 성별로 관리 하여야 함

5)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(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수련시설에 한함)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함
- 수련시설 이용자와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

<연계절차>

- ① (해당 청소년에게)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
- 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, 수집항목, 보유·이용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
- ③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 시·군·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를 통보

<참고>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산정기준

○ 이용자 수 기준관리

-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이용자 성별분리통계 관리
- 이용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
 - 개인·단체의 단순 이용 및 대관을 통한 시설 내부의 공간이용
 - 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 내부 공간의 이용
 - 시설에서 주관하되 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이용
- 연령기준에 따른 이용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
 - 청소년이용자 : 9세 이상 24세 이하
 - 아동이용자 :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생 및 아동 이용자
 - 성인이용자 : 24세 초과 성인 남녀 이용자
- 실제 이용 인원수와 연간 이용인원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수 산정
 - 실인원의 산정기준
 - * 연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일간 중복 및 프로그램 간 참여 중복을 제외한 개인(자연인) 1인을 이용인원 1인으로 계산하여 합산
 - *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시설에서는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용한 공간의 구분 없이 방문자 1인을 1인으로 산정
 - *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실 인원을 계산할 경우 2일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수, 일수에 구분 없이 해당 일별 참가자 수로 산정
 - 연인원의 산정기준
 - * 연간 이용자 수의 연인원 계산 시 일별 이용자를 합산하여 산정. 단, 요구기준에 따라 일별 이용자의 기준은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산정

○ 이용률 산정기준

-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관리
 - * 전체 이용자 수를 모수로 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 수를 계산
 - * 청소년이용률 60%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률 분포와 경향을 분석

<참고> 수련시설의 이용범위(법3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)

1. 법인·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
 2.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
 3.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·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
 4.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·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
 5. 기 타
 -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
 -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·편익 시설 등의 사용
 -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
- ※ 1, 2, 3의 이용범위
-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
 -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함
 - 다만, 전년도외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

| 구 분 | | 적용대상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이용 범위 | 청소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학교단체 수련활동(전체 수련시설) ▪ 수련시설 자체 모집 청소년수련활동(전체 수련시설) |
| | 일반 (40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·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(전체 수련시설) ▪ '평생교육법'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(전체 수련시설) ▪ 유스호스텔 및 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·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(유스호스텔, 야영장) *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가족은 제외 |
| 추가(+a) 이용가능 용도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▪ 수련원,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의 부대·편익시설 등 사용 ▪ 수련관, 문화의집 및 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|
| 이용제한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실 이용 |